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줌줌 · 응모·실무 가이드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신고는 어디에 어...

루리의 줌줌이 정리한 글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할까요

루리

협박, 밤 9시 이후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빔 알리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알릴 수 있어요.

협박, 밤 9시 이후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빔 알리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알릴 수 있어요.

법제처 법령(2026-10-28 확인)과 금융감독원·정부24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아니예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 1. 금지되는 행위 유형

유형	내용	근거
폭행·협박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제9조제1호
반복·야간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전화·문자	제9조제2·3호
제3자에게 알리기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채무 내용을 알리기	제9조제4·7호
대신 갚으라고 강요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제9조제6호
거짓 표시	법원·국가기관으로 오인할 표지 사용,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표시	제11조
관계인 연락	채무자 소재 문의 외에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연락	제8조의3
부당 비용	의무 없는 추심 비용 청구	제13조

2 2. 처벌과 과태료(법 제15조·제17조)

- 폭행·협박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야간 연락, 개인정보 누설,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의사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관계인 방문·연락(제8조의3제1항), 국가기관 오인 표지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제14조).
-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직접 연락이 제한돼요(제8조의2). 적용되는 추심자 범위는 법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3. 대응 순서

-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카톡·부재중 기록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요.
- 방문 시간, 횟수, 말한 내용을 일지로 적어 두세요. 금융감독원 안내도 기록이 없으면 일지를 쓰라고 해요.
- 상대가 누구인지(소속·성명·연락처)와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요.
- 채무 내용을 확인해요. 대부업체 등에는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5조).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 112에 신고·상담해요.
- 필요하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을 상담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신청할 수 있어요.

4. 어디에 신고하나요

기관	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표기), 온라인 피해신고
경찰	112,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대부업체	업체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5. 자주 하는 실수

- **증거 없이 신고:** 통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 **개인정보를 먼저 넘김:** 상대 신원 확인 전에 계좌·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 **사칭 업체에 의뢰:**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 공식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로고가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예요.
- **대신 갚아 주기:** 가족에게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 여부는 상담으로 공식 확인하세요.

6. 가상 예시

G씨는 밀린 대출 때문에 밤 10시에 하루 여러 번 전화를 받고, 회사로도 연락이 왔어요. G씨는 통화를 녹음하고 일지를 쓴 뒤 1332에 상담했어요. 이런 연락은 야간·반복 연락과 제3자 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대상으로 안내돼요. 실제 판단은 신고 후 기관이 해요.

7. 알아 두면 좋은 점

- 채무 자체와 추심 방법은 별개예요. 빚이 있어도 불법 추심은 신고할 수 있어요.
- 채무자의 직장·거주지에서 공연히 채무를 알리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
-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 요구가 금지되었거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요(제12조).
- 운영 시간과 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어요. 전화 전에 금융감독원 안내를 **공식 확인**하세요.

8. 체크리스트

-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를 보관했다
- 연락 시간·횟수 일지를 썼다
- 추심자 신원과 채권자를 확인했다
- 1332 또는 112에 알렸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여부를 상담했다
- 수수료를 받는 사칭 업체가 아닌지 확인했다

9. 용어 정리

- **채권추심자**: 빚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 **관계인**: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 사람이에요.
- **채무확인서**: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적은 서류예요.
- **채무자대리인**: 추심에 대신 대응해 주는 사람이에요. 정부24에 무료 선임 안내가 있어요.

10. 자주 묻는 질문

Q. 낮에 한 번 전화한 것도 불법인가요?

A.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을 금지해요. 한 번의 연락이 모두 불법은 아니예요.

Q. 1332는 무료인가요?

A. 금융감독원 안내에 통화료 발신자 부담으로 표기돼요.

11.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 <https://la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9> (<https://la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9>)

- 정부24 불법사금융 피해 112, 133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118152> (h
ttps://www.gov.kr/portal/ntnadmNews/4118152)
- 금융감독원 신고·상담 안내: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0)
menuNo=201230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2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